



제2936호 2024. 2. 23.(금)

www.jeonbuk.go.kr.

## 규 칙

- 규칙 323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훈 령

- 훈령 제1814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29

## 고 시

- 고시 제2024-46호 진안군 안천노성지구 신규전원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 ..... 31
- 고시 제2024-4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35
- 고시 제2024-48호 정읍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 인가 고시 ..... 45
- 고시 제2024-50호 토지 세목(변경) 고시(정읍 구절재 오르막차로 설치사업) ..... 46
- 고시 제2024-51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정읍시) ..... 51

## 공 고

- 공고 제2024-234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 52
- 공고 제2024-28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54
- 공고 제2024-29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56
- 공고 제2024-29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63
- 공고 제2024-29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64
- 공고 제2024-304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록 공고 ..... 65
- 공고 제2024-307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 66
- 공고 제2024-308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93
- 공고 제2024-310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 94
- 전북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2호 재산등록사항 공고 ..... 95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지시사항

- 2024. 2. 14.(수)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99

## 시 군

- 익산시 고시 제2024-32호 참다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01
- 김제시 고시 제2024-30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 106
- 완주군 고시 제2024-22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07
- 임실군 고시 제2024-20호 임실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09

## 기 타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3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안) ..... 111
- 금남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공고 ..... 113
- 부안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 ..... 115
- 오천초등학교 공고 제2024-3호 공인 폐기 공고 ..... 119
- 전주문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4호 공인 폐기 공고 ..... 120
- 전주팔복초등학교 공고 제2024-4호 전주팔복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기 공고 ..... 121
- 주산중학교 공고 제2024-1호 공인 폐기 공고 ..... 122
- 화율초등학교 공고 제2024-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123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3235호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2025년 1월 1일: [별표 7의4]의 녹지 직렬에 관한 개정규정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응시수수료 반환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공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데 이 터	<p>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p>
공 업 일반기계	<p>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조 선	<p>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자기기</p> <p>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p> <p>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벼짓중근,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 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 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 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 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 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 짐,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 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조리	조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 (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 1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 1급 무대음향전문인 1급	무대기계전문인2 급 무대음향전문인2 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 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 (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 (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 (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 (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사(12) 사서(12) 방사선사(12) 치과사(12) 예방사(12) 보건사(12) 심사(12) 특수(특수) 1급(7)	임상사(8) 사서(8) 방사선사(8) 치과사(8) 예방사(8) 보건사(8) 심사(8) 1급(3)	임상사(5) 사서(5) 방사선사(5) 치과사(5) 예방사(5) 보건사(5) 심사(5) 1급(3)	임상사(2) 사서(2) 방사선사(2) 치과사(2) 예방사(2) 보건사(2) 심사(2) 2급	임상사(1) 사서(1) 방사선사(1) 치과사(1) 예방사(1) 보건사(1) 심사(1) 3급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약무	약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호	간호	주산사(12) 간호사(12)	주산사(6) 간호사(6)	주산사(3) 간호사(3)	주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주산사(12) 간호사(12)	주산사(6) 간호사(6)	주산사(3) 간호사(3)	주산사 간호사	
	일반환경수질 대기 폐기물	의사(2) 수의사(7) 환경사(7) 환경수질운영관 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환경사(8) 환경수질운영관 리사 1급(3)	수의사 약사(5) 환경수질운영관 리사 1급	위생사(2) 수질운영관 리사 2급	위생사 수질운영관 리사 3급
항공	일반항공	승무원(5) 조종사(5) 관사(10) 통관제사(10) 정비사(10) 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6) 관사(6) 통관제사(6) 정비사(6) 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관사(3) 통관제사(3) 정비사(3) 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관사 통관제사 정비사 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종	승무원(5) 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10) 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캐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          독자, 핵연료물          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핵연료          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          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          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          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          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          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          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          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          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벼짓중근,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p> <p>농산물품질관리사</p>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p> <p>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p> <p>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녹 지	산림자원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p>
	산림보호	<p>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p> <p>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p> <p>기능사 : 산림</p>	<p>기사자격증</p> <p>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p>
	산림이용	<p>기술사 : 산림</p> <p>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p>	
	조 경	<p>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p> <p>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p> <p>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p> <p>기능사 : 조경, 산림</p>	<p>기사자격증</p> <p>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p>

해양수산	일반해양	<p>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p>	
	일반수산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p>
	어 로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해양교통시 설	<p>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p>	
보 건	보 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경	수질	<p>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p> <p>기능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p>
	대기	<p>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산림</p> <p>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폐기물	<p>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산림</p> <p>기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시설	도시계획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p> <p>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들,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시설 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p>농업기계</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 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화 학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 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농촌지도	농 업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촌지도	산업근총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조 경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p>기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수산자원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어촌지도	어 촌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p>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p> <p>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p>	
	수산공학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수산가공	<p>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p> <p>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식품</p>	
보건연구	의학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p> <p>: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p>
	약학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p>
	공중보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p> <p>임상심리사 1급</p> <p>임상심리사 2급</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환경연구	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p>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p>기사 : 방재</p>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훈령 제1814호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필기시험은 7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주관식 논술로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④ 면접시험은 30점 만점으로 한다.
- 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결정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전입시험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①·② (생략)</p> <p>③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p> <p>④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p> <p>⑤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주관식 논술로 한다.</p>	<p>제27조(전입시험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필기시험은 7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주관식 논술로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p> <p>④ 면접시험은 30점 만점으로 한다.</p> <p>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결정한다.</p>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46호

### 진안군 안천노성지구 신규전원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

「농어촌 정비법」 제101조 및 105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도서는 진안군 농촌활력과(☎063-430-8066),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 1. 마을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가.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명칭 : 진안군 안천노성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67번지 일원
- 면적 : 23,794m<sup>2</sup>

##### 나. 사업개요

- 주택용지 : 13,513m<sup>2</sup>(단독주택 30호)
- 도로시설 : 4,296m<sup>2</sup> L=668m, B=8~10m
- 공용시설 : 주차장 2개소, 쉼터 2개소, 119지역대 1개소(1,002m<sup>2</sup>), 마을회관 1개소(833m<sup>2</sup>), 저류지, 녹지 등

##### 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합 계	23,794	100.0	
주거용지(단독주택)	13,513	56.8	30필지
공동이용시설용지	소계	7,680	32.3
	마을회관	833	3.5
	안전119지역대	1,002	4.2
	쉼터	870	3.7
	주차장	679	2.9
	도로	4,179	17.6
	보행로	117	0.5
녹지용지	2,601	10.9	

라. 사업의 시행예정기간 및 시행방식

- 사업의 시행 예정기간 : 2023 ~ 2026년(4개년)
- 시행방식 : 지자체형

마.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 시행 예정자 : 진안군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

안군청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 “붙임”

사.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 관련 도면 : “별도 붙임”

아.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실음 생략”

- 위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와 같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권리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면	리					주소	소유자	
합계			36필지		31,800	23,794			
1	안천	노성	742	대	650	65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2 길 6-4	장금재	
2	안천	노성	742-3	답	443	44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2 길 6-4	장금재	
3	안천	노성	743-2	답	893	89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2 길 6-4	장금재	
4	안천	노성	744	답	1,215	1,215	-	기획재정부	
5	안천	노성	744-1	답	2,478	2,478	-	기획재정부	
6	안천	노성	744-2	답	1,250	1,250	-	기획재정부	
7	안천	노성	744-3	답	996	99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요골길 38	석우석	
8	안천	노성	744-5	도로	10	1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081	한증헌	
9	안천	노성	744-6	도로	16	1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998	한홍섭	
10	안천	노성	744-7	도로	48	4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084	한전희	
11	안천	노성	745-1	답	1,177	1,17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2 길 6	신영복	
12	안천	노성	745-2	답	1,481	1,48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49번길 30, 207동 902호(교촌동, 한승미메이드)	이은숙	
13	안천	노성	746-1	답	1,047	1,0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9길 9, 401 호 (연남동)	한규설	
14	안천	노성	746-3	답	70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9길 9, 401 호 (연남동)	한규설	
15	안천	노성	747-1	답	1,304	1,30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2 길 8	한준희	
16	안천	노성	747-4	답	94	94	-	국토교통부	
17	안천	노성	748	답	1,557	1,55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2 길 6-4	장금재	
18	안천	노성	748-1	답	53	5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2 길 6-4	장금재	
19	안천	노성	749	답	1,769	1,7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태평동 1가 61-58	한중규	
20	안천	노성	750-1	답	1,267	1,26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642-4	한준희	
21	안천	노성	750-2	도로	13	13	-	국토교통부	
22	안천	노성	750-3	답	29	29	-	국토교통부	
23	안천	노성	751	답	1,770	1,088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41-8 과량새 아트빌 2-201	한규남 외 5인	
24	안천	노성	751-1	도로	2	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상리 577	한규조 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면	리					주소	소유자	
								11인	
25	안천	노성	752-1	도로	37	28	-	진안군	
26	안천	노성	752-3	답	660	8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1 길 16	유철호	
27	안천	노성	753	답	1,504	72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1 길 6-7	한지윤	
28	안천	노성	754-1	답	1,273	1,273	-	환경부	
29	안천	노성	754-4	답	56	5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1413	김차식	
30	안천	노성	755-1	답	1,554	1,55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021	한규룡 외 1인	
31	안천	노성	755-4	답	43	43	-	국토교통부	
32	안천	노성	761-4	전	2,348	9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보한2 길 6	정찬숙	
33	안천	노성	770-1	도로	299	5	-	진안군	
34	안천	노성	697-2	도로	1,763	637	-	국토교통부	
35	안천	노성	1597-10	도로	1,329	283	-	국토교통부	
36	안천	노성	1615	구거	94	66	-	농림축산식품 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사방사업 시행 후 5년경과)
-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의 사방지의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참조
- 사방지 지정해제 도면 : 토지소재지 각 시·군별 산림업무담당부서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비치
- 사방지 지정해제 시·군별 내역

시군	대상지 내역			사업별			비고
	필지수	면적(m <sup>2</sup> )	입목(m <sup>3</sup> )	사업종	필지수	면적(m <sup>2</sup> )	
계	243필지	97,870	-	산지	-	-	
				계류	123	39,586	
				사방댐	120	58,284	
				기타	-	-	
군산시	4필지	2,284		산지	-	-	
				계류	2	745	
				사방댐	2	1,539	
				기타	-	-	
정읍시	40필지	15,099		산지	-	-	
				계류	31	9,194	
				사방댐	9	5,905	
				기타	-	-	
남원시	43필지	16,573		산지	-	-	
				계류	8	3,194	
				사방댐	35	13,379	
				기타	-	-	
완주군	36필지			산지	-	-	

		15,546		계류	21	8,918	
				사방댐	15	6,628	
				기타	-	-	
진안군	21필지	12,994		산지	-	-	
				계류	-	-	
				사방댐	21	12,994	
				기타	-	-	
무주군	5필지	1,894		산지	-	-	
				계류	-	-	
				사방댐	5	1,894	
				기타	-	-	
장수군	25필지	12,573		산지	-	-	
				계류	19	5,710	
				사방댐	6	6,863	
				기타	-	-	
임실군	24필지	7,334		산지	-	-	
				계류	16	5,029	
				사방댐	8	2,305	
				기타	-	-	
순창군	23필지	7,111		산지	-	-	
				계류	12	4,437	
				사방댐	11	2,674	
				기타	-	-	
고창군	8필지	4,103		산지	-	-	
				계류	-	-	
				사방댐	8	4,103	
				기타	-	-	
부안군	14필지	2,359		산지	-	-	
				계류	14	2,359	
				사방댐	-	-	
				기타	-	-	

붙임 사방지의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1부. 끝.

### 사 방 지 지 정 해 제 대 상 지 내 역

산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 방 지 지 정			사방지 해제	
시군	읍면동	리				면적 (㎡)	사방 종류	고시번호 및 일자	면적 (㎡)	연도
총 합			243필지		12,495,345	97,870		제2018-132 2018.6.8.	97,870	
군산	소룡		산8-2	임	47,518	479	계류	"	479	2024
군산	소룡		산-1	임	34,034	266	계류	"	266	2024
군산	성산	고봉	16	전	4,761	42	사방덤	"	42	2024
군산	성산	고봉	산28-1	임	124,907	1,497	사방덤	"	1,497	2024
합계			4필지		211,220	2,284			2,284	
정읍	구룡		산75-3	임	19,837	99	사방덤	"	99	2024
정읍	구룡		7	답	668	476	사방덤	"	476	2024
정읍	구룡		산74	임	226,891	971	사방덤	"	971	2024
정읍	산외	오공	1327-1	전	67	34	계류	"	34	2024
정읍	산외	오공	1528-2	구	10,448	2,333	계류	"	2,333	2024
정읍	산외	오공	1343	전	1,560	167	계류	"	167	2024
정읍	산외	오공	1548	도	122	126	계류	"	126	2024
정읍	산외	오공	산214	임	188,728	52	계류	"	52	2024
정읍	산외	오공	1547	도	327	141	계류	"	141	2024
정읍	산외	오공	1527	도	1,054	76	계류	"	76	2024
정읍	산외	오공	1347	전	433	45	계류	"	45	2024
정읍	산외	오공	산263	임	66,744	232	계류	"	232	2024
정읍	철성	무성	863	구	47,079	428	계류	"	428	2024
정읍	철성	무성	산38	임	119,207	1,371	계류	"	1,371	2024
정읍	철성	무성	405	답	1,015	55	계류	"	55	2024
정읍	철성	무성	746	답	1,306	101	사방덤	"	101	2024
정읍	철성	무성	산39	임	118,215	3,255	사방덤	"	3,255	2024
정읍	철성	무성	산38	임	119,207	528	사방덤	"	528	2024
정읍	철성	무성	406	전	760	21	사방덤	"	21	2024
정읍	철성	무성	863	구	47,079	425	사방덤	"	425	2024
정읍	철성	무성	산105	구	99	29	사방덤	"	29	2024
정읍	철보	시산	1222-63	답	3,735	30	계류	"	30	2024
정읍	철보	시산	1222-64	구	1,541	210	계류	"	210	2024

정읍	철보	시산	1078	전	169	58	계류	"	58	2024
정읍	철보	시산	산191	임	14,876	115	계류	"	115	2024
정읍	철보	시산	산190	임	1,276	116	계류	"	116	2024
정읍	임암	등천	865-7	천	1,276	353	계류	"	353	2024
정읍	임암	등천	산141	임	11,541	126	계류	"	126	2024
정읍	임암	등천	834	답	711	180	계류	"	180	2024
정읍	임암	등천	산133	임	15,570	73	계류	"	73	2024
정읍	임암	등천	872-4	구	1,614	414	계류	"	414	2024
정읍	임암	등천	687	전	12,274	28	계류	"	28	2024
정읍	임암	등천	681-1	답	2,066	37	계류	"	37	2024
정읍	임암	등천	산132	임	12,099	768	계류	"	768	2024
정읍	임암	등천	산205	구	99	93	계류	"	93	2024
정읍	산외	동곡	636	답	2,393	43	계류	"	43	2024
정읍	산외	동곡	638	답	1,686	165	계류	"	165	2024
정읍	산외	동곡	765	구	41,673	1,244	계류	"	1,244	2024
정읍	산외	동곡	640-2	임	192	51	계류	"	51	2024
정읍	산외	동곡	640-1	전	251	30	계류	"	30	2024
합계			40필지		1,095,888	15,099			15,099	
남원	대강	생암	729	구	27,613	2,915	사방댐	"	2,915	2024
남원	대강	생암	593-7	구	5,428	147	사방댐	"	147	2024
남원	아영	월산	830	구	2,623	16	사방댐	"	16	2024
남원	아영	월산	산8	임	9,379	12	사방댐	"	12	2024
남원	아영	월산	산92-4	구	198	88	사방댐	"	88	2024
남원	아영	월산	산10-3	임	20,163	619	사방댐	"	619	2024
남원	아영	월산	산9-5	임	10,413	580	사방댐	"	580	2024
남원	아영	구상	675-41	유	326	29	사방댐	"	29	2024
남원	아영	구상	산74	임	13,289	126	사방댐	"	126	2024
남원	아영	구상	698-12	구	6,781	99	사방댐	"	99	2024
남원	아영	구상	산73	임	12,000	20	사방댐	"	20	2024
남원	아영	구상	산72	임	16,592	28	사방댐	"	28	2024
남원	아영	구상	673-1	전	9,005	112	사방댐	"	112	2024
남원	아영	구상	673	전	13,405	1,210	사방댐	"	1,210	2024
남원	아영	구상	산91	구	5,041	48	사방댐	"	48	2024
남원	이백	내동	596	구	5,070	291	사방댐	"	291	2024



남원	이백	내동	25	임	585	27	사방댐	"	27	2024
남원	이백	내동	27	답	2,942	16	사방댐	"	16	2024
남원	이백	효기	산31	임	61,190	431	사방댐	"	431	2024
남원	인월	건지	산33-6	임	17,244	822	사방댐	"	822	2024
남원	인월	건지	10-5	답	1,891	22	사방댐	"	22	2024
남원	인월	건지	산43-3	임	90,347	456	사방댐	"	456	2024
남원	인월	건지	7-1	전	1,305	23	사방댐	"	23	2024
남원	인월	인월	653	구	6,436	627	사방댐	"	627	2024
남원	인월	인월	375	전	76	27	사방댐	"	27	2024
남원	인월	인월	산26	임	59,703	548	사방댐	"	548	2024
남원	인월	인월	산94	구	1,983	613	사방댐	"	613	2024
남원	인월	인월	산24-3	임	12,438	728	사방댐	"	728	2024
남원	인월	인월	산24-1	임	893	12	사방댐	"	12	2024
남원	인월	상우	산43-1	임	5,750	159	계류	"	159	2024
남원	인월	상우	산43-6	임	1,222	27	계류	"	27	2024
남원	인월	상우	산43-7	임	1,368	425	계류	"	425	2024
남원	인월	상우	산44-19	임	86,647	1,755	계류	"	1,755	2024
남원	인월	상우	산79-6	임	3,883	50	계류	"	50	2024
남원	인월	상우	산79	임	9,567	570	계류	"	570	2024
남원	인월	상우	산76	임	13,884	80	계류	"	80	2024
남원	인월	상우	산75	임	75,455	128	계류	"	128	2024
남원	식정		산34-1	도	6,646	87	사방댐	"	87	2024
남원	식정		산38-1	임	1,488	121	사방댐	"	121	2024
남원	식정		산39	임	8,294	1,204	사방댐	"	1,204	2024
남원	식정		산44	임	16,776	228	사방댐	"	228	2024
남원	식정		산50-1	임	44,628	113	사방댐	"	113	2024
남원	식정		산47	임	141,521	934	사방댐	"	934	2024
합계			43필지		831,488	16,573			16,573	
원주	고산	성재	831	도	185	22	계류	"	22	2024
원주	고산	성재	810	대	2625	39	계류	"	39	2024
원주	고산	성재	833	구	3,281	1,540	계류	"	1,540	2024
원주	고산	성재	814-1	임	17,786	864	계류	"	864	2024
원주	고산	성재	산203	구	694	46	계류	"	46	2024
원주	화산	우월	산58	임	35,700	335	사방댐	"	335	2024

원주	화산	우월	527	전	291	17	사방댐	"	17	2024
원주	화산	우월	산49-1	임	148,364	1,055	사방댐	"	1,055	2024
원주	화산	우월	산56	임	9,223	161	사방댐	"	161	2024
원주	운주	고당	산1	임	60,457	739	계류	"	739	2024
원주	운주	고당	산30	임	1,199,405	382	계류	"	382	2024
원주	운주	고당	1-1	전	2,539	40	계류	"	40	2024
원주	운주	구제	산23	임	219,372	1,901	계류	"	1,901	2024
원주	운주	구제	25	구	655	115	계류	"	115	2024
원주	운주	구제	36-1	대	650	93	계류	"	93	2024
원주	운주	구제	683-39	구	5,933	322	계류	"	322	2024
원주	운주	구제	364-1	전	1,654	19	계류	"	19	2024
원주	운주	구제	362	전	1,293	132	계류	"	132	2024
원주	운주	구제	683-18	구	4,395	1,395	계류	"	1,395	2024
원주	운주	구제	359	전	1,964	64	계류	"	64	2024
원주	운주	구제	358	전	2,612	469	계류	"	469	2024
원주	운주	구제	산83	임	28,760	549	계류	"	549	2024
원주	운주	구제	354-2	전	2,013	42	계류	"	42	2024
원주	운주	구제	356	임	215	25	계류	"	25	2024
원주	운주	구제	357	전	916	120	계류	"	120	2024
원주	경천	경천	687	구	19,218	145	사방댐	"	145	2024
원주	경천	경천	375	대	212	124	사방댐	"	124	2024
원주	경천	경천	373	대	1,910	40	사방댐	"	40	2024
원주	경천	경천	374	구	69	38	사방댐	"	38	2024
원주	경천	경천	산66	임	42,979	595	사방댐	"	595	2024
원주	경천	경천	산37	임	287,123	2,165	사방댐	"	2,165	2024
원주	상관	의양	산166	임	89,256	236	사방댐	"	236	2024
원주	상관	의양	2	답	744	121	사방댐	"	121	2024
원주	상관	의양	1-1	전	1,534	290	사방댐	"	290	2024
원주	상관	의양	산167-2	임	249,223	765	사방댐	"	765	2024
원주	상관	의양	800	구	26,486	541	사방댐	"	541	2024
합계			36필지		2,469,736	15,546			15,546	
진안	부귀	두남	109-6	대	619	22	사방댐	"	22	2024
진안	부귀	두남	산48	임	98,243	2,469	사방댐	"	2,469	2024
진안	부귀	수향	산5	임	9,917	121	사방댐	"	121	2024

진안	부귀	수항	산4	임	6,842	2,030	사방댐	"	2,030	2024
진안	부귀	궁항	391	전	2,341	34	사방댐	"	34	2024
진안	부귀	궁항	산92-4	임	1,075,140	1,086	사방댐	"	1086	2024
진안	부귀	궁항	산36	임	47,382	202	사방댐	"	202	2024
진안	부귀	궁항	산100	천	167	43	사방댐	"	43	2024
진안	부귀	궁항	529-11	천	1,587	474	사방댐	"	474	2024
진안	성수	중길	산102-2	임	277,220	1,444	사방댐	"	1,444	2024
진안	부귀	봉암	5084-1	임	987	64	사방댐	"	64	2024
진안	부귀	봉암	5084-4	임	821	362	사방댐	"	362	2024
진안	부귀	봉암	5084-5	임	4,501	404	사방댐	"	404	2024
진안	부귀	봉암	5082-4	임	156,002	189	사방댐	"	189	2024
진안	부귀	봉암	산85-1	임	16,874	2,387	사방댐	"	2,387	2024
진안	안천	백화	238	답	2,367	117	사방댐	"	117	2024
진안	안천	백화	1662-7	구	2,344	217	사방댐	"	217	2024
진안	안천	백화	768	답	1,084	90	사방댐	"	90	2024
진안	안천	백화	237	답	2,949	258	사방댐	"	258	2024
진안	안천	백화	237-1	전	7,802	25	사방댐	"	25	2024
진안	안천	백화	산79	임	7,835	956	사방댐	"	956	2024
합계			21필지		1,723,024	12,994			12,994	
무주	무풍	덕지	130-2	답	1,440	293	사방댐	"	293	2024
무주	무풍	덕지	130-3	답	1,198	347	사방댐	"	347	2024
무주	무풍	덕지	130-1	임	370	88	사방댐	"	88	2024
무주	무풍	덕지	산62-1	임	18,942	994	사방댐	"	994	2024
무주	무풍	덕지	산59	임	37,839	172	사방댐	"	172	2024
합계			5필지		59,789	1,894			1,894	
장수	장수	노하	754-5	전	337	85	계류	"	85	2024
장수	장수	노하	산97-1	임	5,218	405	계류	"	405	2024
장수	장수	노하	754-33	전	3,123	12	계류	"	12	2024
장수	장수	노하	산85	임	45,623	472	계류	"	472	2024
장수	장수	용계	산25-2	임	8,111	580	계류	"	580	2024
장수	장수	용계	산25-2	임	8,111	755	사방댐	"	755	2024
장수	장수	용계	산25-4	임	17,544	709	사방댐	"	709	2024
장수	장수	대성	산258-9	임	152,562	1,300	사방댐	"	1,300	2024
장수	산서	백운	94	답	3,222	391	계류	"	391	2024

장수	산서	백운	859	천	56,622	1,748	계류	"	1,748	2024
장수	산서	백운	857	도	294	72	계류	"	72	2024
장수	산서	백운	90	임	982	24	계류	"	24	2024
장수	산서	백운	산44	임	21,223	174	계류	"	174	2024
장수	천천	비룡	산18-1	임	395,696	1,299	사방댐	"	1,299	2024
장수	천천	비룡	39	임	5,402	724	사방댐	"	724	2024
장수	천천	비룡	산84-52	임	577,177	2,076	사방댐	"	2,076	2024
장수	계남	호덕	861	구	1,282	161	계류	"	161	2024
장수	계남	호덕	1033-2	도	498	131	계류	"	131	2024
장수	계남	호덕	1034-2	구	315	264	계류	"	264	2024
장수	계남	호덕	산45-1	임	1,508	128	계류	"	128	2024
장수	계남	호덕	822	답	1,240	60	계류	"	60	2024
장수	변양	사양	1279	천	333,022	411	계류	"	411	2024
장수	변양	사양	8	임	922	13	계류	"	13	2024
장수	변양	사양	산206-2	임	1,095,669	106	계류	"	106	2024
장수	변양	논곡	산36	임	40,989	473	계류	"	473	2024
합계			25필지		2,776,692	12,573			12,573	
임실	청웅	옥전	255-1	전	565	92	사방댐	"	92	2024
임실	청웅	옥전	255-2	도	169	34	사방댐	"	34	2024
임실	청웅	옥전	253	139	139	139	사방댐	"	139	2024
임실	청웅	옥전	산138	구	125	50	사방댐	"	50	2024
임실	청웅	옥전	산5	임	72,131	467	사방댐	"	467	2024
임실	청웅	옥전	산6	임	6,744	424	사방댐	"	424	2024
임실	청웅	옥전	1194	구	10,011	579	사방댐	"	579	2024
임실	오수	군평	837	천	4,069	34	계류	"	34	2024
임실	오수	군평	산154-1	임	4,661	214	계류	"	214	2024
임실	오수	군평	산156	임	16,507	628	계류	"	628	2024
임실	오수	군평	산155	임	24,297	239	계류	"	239	2024
임실	삼계	죽계	산23	임	893,723	520	사방댐	"	520	2024
임실	청웅	목석	1112	답	539	180	계류	"	180	2024
임실	청웅	목석	1271-24	구	19,837	1,478	계류	"	1,478	2024
임실	청웅	목석	1114	답	1,365	145	계류	"	145	2024
임실	청웅	목석	1108-2	답	694	21	계류	"	21	2024
임실	오수	둔덕	784-1	천	360,467	1,070	계류	"	1,070	2024

임실	오수	둔덕	산63-4	임	1,196	57	계류	"	57	2024
임실	오수	둔덕	757	전	707	86	계류	"	86	2024
임실	오수	둔덕	754-1	전	41,973	92	계류	"	92	2024
임실	오수	둔덕	755	임	1,808	187	계류	"	187	2024
임실	오수	둔덕	767-2	전	34,023	458	계류	"	458	2024
임실	오수	둔덕	산82	구	298	48	계류	"	48	2024
임실	오수	둔덕	산63	임	631,649	92	계류	"	92	2024
합계			24필지		2,127,697	7,334			7,334	
순창	동계	주월	12	답	774	15	사방댐	"	15	2024
순창	동계	주월	463	구	7,664	197	사방댐	"	197	2024
순창	동계	주월	11	답	645	131	사방댐	"	131	2024
순창	동계	주월	10	답	545	14	사방댐	"	14	2024
순창	동계	주월	산59	임	28,562	554	사방댐	"	554	2024
순창	동계	주월	산63	임	47,603	49	사방댐	"	49	2024
순창	동계	주월	산61-1	임	58,215	88	사방댐	"	88	2024
순창	동계	주월	463	구	7,664	457	사방댐	"	457	2024
순창	동계	주월	18	전	744	18	사방댐	"	18	2024
순창	동계	주월	16	답	496	36	사방댐	"	36	2024
순창	동계	주월	산58-1	임	204,099	1,115	사방댐	"	1,115	2024
순창	동계	수장	8-2	답	466	26	계류	"	26	2024
순창	동계	수장	11-2	천	1,332	70	계류	"	70	2024
순창	동계	수장	838	구	18,094	1,664	계류	"	1,664	2024
순창	동계	수장	17	임	215	111	계류	"	111	2024
순창	동계	수장	산68-3	임	2,479	174	계류	"	174	2024
순창	동계	수장	산69	임	8,231	61	계류	"	61	2024
순창	동계	수장	산70-2	임	7,140	401	계류	"	401	2024
순창	금과	대성	704-8	구	1,536	360	계류	"	360	2024
순창	금과	대성	산72-1	임	5,058	47	계류	"	47	2024
순창	금과	내동	809	구	4,755	442	계류	"	442	2024
순창	금과	내동	664-13	구	687	154	계류	"	154	2024
순창	금과	내동	산60	임	18,858	927	계류	"	927	2024
합계			23필지		425,862	7,111			7,111	
고창	고수	상평	740	구	26,037	402	사방댐	"	402	2024
고창	고수	상평	24	전	122	80	사방댐	"	80	2024

고창	고수	상평	25	전	6,198	147	사방댐	"	147	2024
고창	고수	상평	산29-1	임	607,934	1,337	사방댐	"	1,337	2024
고창	고수	상평	26	답	208	99	사방댐	"	99	2024
고창	성송	무송	산83	구	5,754	422	사방댐	"	422	2024
고창	성송	무송	산53-1	임	21,974	1,537	사방댐	"	1,537	2024
고창	성송	무송	산53-2	목	10,812	79	사방댐	"	79	2024
합계			8필지		679,039	4,103			4,103	
부안	상서	가오	1035-100	구	2,209	1,117	계류	"	1,117	2024
부안	상서	가오	896-1	천	107	98	계류	"	98	2024
부안	상서	가오	896	전	700	23	계류	"	23	2024
부안	상서	가오	889	전	357	19	계류	"	19	2024
부안	상서	가오	873	전	324	40	계류	"	40	2024
부안	상서	가오	산61-1	구		61	계류	"	61	2024
부안	상서	가오	1035-35	전	315	119	계류	"	119	2024
부안	상서	가오	1035-22	전	88	57	계류	"	57	2024
부안	상서	가오	1035-34	대	89	48	계류	"	48	2024
부안	상서	가오	891	전	321	35	계류	"	35	2024
부안	상서	가오	1049	도	221	22	계류	"	22	2024
부안	상서	가오	892	전	304	96	계류	"	96	2024
부안	상서	가오	산55-1	임	89,554	516	계류	"	516	2024
부안	상서	가오	874	전	321	108	계류	"	108	2024
합계			14필지		94,910	2,359			2,359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48호

### 정읍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정읍시 소규모 하수도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폐지인가하고 인가사항에 대해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정읍시장
- 나.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2. 사업목적 : 능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과 공동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완료로 기존 노후된 신기, 공동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연계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설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재지	처리장 부지면적	비고
신기마을	산내면 능교리 1305-4번지	471㎡	
공동마을	산외면 오공리 1626번지	1,615㎡	

4. 폐지하려는 시설의 명칭, 용량 및 폐지사유

시설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가동개시일자	폐지사유
신기마을	30㎡/일	2003.4.15.	정읍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기존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까지 통합 처리함에 따라 폐지
공동마을	30㎡/일	2002.11.28.	

5. 기 타 : 관계서류는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9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0호

**토지 세목(변경) 고시(정읍 구절재 오르막차로 설치사업)**

전라북도 고시 제2023-344(2023. 12. 8.)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국도 30호선 “정읍 구절재 오르막차로 설치사업”에 대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가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 고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 1. 사업명 : 위임국도 30호선 정읍 구절재 오르막차로 설치사업
- 2.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3. 노선명 : 국도 30호선
- 4. 사업기간 : 2023. 12월 ~ 2025. 12월
- 5.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따로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

공사명 : 위임국도 30호선 정읍 구절재 오르막차로 설치사업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동리	지번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분할전	분할후									
1	칠보	시산	산62-4	산62-15 산62-16	임	10,589	166	63 9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6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25-606	한의영			
2	칠보	시산	산62-8		도	380	380			국(건설교통부)			
3	칠보	시산	산62-10		도	1,019	1,019			국(건설부)			
4	칠보	시산	산62-11		도	860	860			국(건설교통부)			
5	칠보	시산	산62-3		임	521	521			국(건설부)			
6	칠보	시산	산62-12		임	17	17			국(건설부)			
7	칠보	시산	산62-5		도	771	771			국(건설교통부)			
8	칠보	시산	산63-4		도	71	71			국(건설부)			
9	칠보	시산	산63-1		도	329	329			전라북도			
10	칠보	시산	산62-14		도	124	124			전라북도			
11	칠보	시산	산64-6		도	173	173			국(건설교통부)			
12	칠보	시산	산64-4		도	2,012	2,012			국(건설교통부)			
13	칠보	시산	산65-5		도	939	939			국(건설교통부)			
14	칠보	시산	산64-2		도	883	883			전라북도			
15	칠보	시산	산65-2		도	397	397			국(건설교통부)			
16	칠보	시산	산65-4		도	31	31			국(건설부)			
17	칠보	시산	산66-11		도	412	412			국(건설교통부)			
18	칠보	시산	산66-8		도	728	728			전라북도			
19	칠보	시산	산66-4		도	333	333			국(건설부)			
20	칠보	시산	산66-10		도	2,413	2,413			국(건설교통부)			
21	칠보	시산	산63-2		도	134	134			전라북도			
22	칠보	시산	산63	산63-5	임	1,541	1,171	1,067	사정	정영식			
23	칠보	시산	산63-3		임	1,991	1,991			국(건설부)			
24	칠보	시산	산64-7		도	7	7			국(건설교통부)			
25	칠보	시산	산64-5		임	1,812	1,812			국(건설부)			
26	칠보	시산	산65-3	산65-8 산65-9	임 임	47,173	643	33 614		국(산림청)			
27	칠보	시산	산65-7		도	1,177	1,177			국(건설교통부)			
28	칠보	시산	산66-3	산66-12	임	19,256	1,124	1,180	신태인읍 백산리 105	전주이씨효령 은풍도경종중 위인			
29	칠보	시산	산66-9		임	265	265			국(건설부)			
30	칠보	시산	산66-7		도	722	722			국(건설부)			
31	칠보	시산	산66-6		임	1,100	1,100			국(건설부)			
32	칠보	시산	산66-5		도	266	266			국(건설교통부)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동리	지번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분할전	분할후									
33	철보	시산	산67-8		임	1,550	1,550			국(건설부)			
34	철보	시산	산66-2		도	137	137			전라북도			
35	철보	시산	산67-7		도	1,785	1,785			국(건설부)			
36	철보	시산	산67-5		도	156	156			국(건설교통부)			
37	철보	시산	산67-2		도	849	849			국(건설교통부)			
38	철보	시산	산67-4		도	173	173			국(건설교통부)			
39	철보	시산	산67-12		임	35	35			국(산림청)			
40	철보	시산	산67-1	산67-13	임	15,815	747	725		국(산림청)			
41	철보	시산	산67-6		임	222	222			국(건설부)			
42	철보	시산	산67-11		임	24	24			국(산림청)			
43	철보	시산	산68-12		임	323	323			국(건설교통부)			
44	철보	시산	산68-9		임	344	344			국(건설부)			
45	철보	시산	산68-7		도	45	45			국(건설부)			
46	철보	시산	산69-4		도	113	113			국(건설부)			
47	철보	시산	산69-8		임	351	351			국(건설부)			
48	철보	시산	산69-1		임	112	112			전라북도			
49	철보	시산	산80-4		임	1,703	1,703			국(국토교통부)			
50	철보	시산	산69-5		도	468	55			국(건설부)			
51	철보	시산	산80-18		도	193	193			국(건설부)			
52	철보	시산	산69-7		도	607	607			국(건설부)			
53	철보	시산	산80-16		임	695	695			국(건설부)			
54	철보	시산	산80-14		도	821	821			국(건설부)			
55	철보	시산	산80-9		도	285	285			국(건설부)			
56	철보	시산	산80-13		임	121	121			국(건설부)			
57	철보	시산	산80-6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58	철보	시산	산81-3		도	178	178			국(건설부)			
59	철보	시산	산81-4		임	482	482			국(건설부)			
60	철보	시산	산81-2		도	198	198			전라북도			
61	철보	시산	산91-2		도	20	20			전라북도			
62	철보	시산	산92-5		도	308	308			국(건설교통부)			
63	철보	시산	산92-12		도	241	241			국(건설부)			
64	철보	시산	산92-10		도	1,186	1,186			전라북도			
65	철보	시산	산92-15		도	1,198	1,198			국(건설교통부)			
66	철보	시산	산92-11		도	103	103			국(건설부)			
67	철보	시산	산92-1	산92-19	임	6,881	233	236	전라북도 정읍시 철보면 시산리 330-1	정희준외1인			
68	철보	시산	산92-4		도	150	150			국(건설교통부)			
69	철보	시산	산92-16		임	244	244			전라북도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동리	지번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분할전	분할후									
70	철보	시산	산92-7		임	304	304			국(건설부)			
71	철보	시산	산103-1		임	13,584	4		서울 종로구 평창동 512-21	권영일			
72	철보	시산	산103-6		임	34	34			국(건설부)			
73	철보	시산	산103-13		임	27	27			국(건설교통부)			
74	철보	시산	산103-8		도	18	18			국(건설부)			
75	철보	시산	산68-11		도	184	184			국(건설교통부)			
76	철보	시산	산68-10		임	96	96			국(건설부)			
77	철보	시산	산68-8		도	138	138			국(건설교통부)			
78	철보	시산	산68-5		임	852	852			국(산림청)			
79	철보	시산	산68-13		임	19	19			국(산림청)			
80	철보	시산	산92-3	산92-20 산92-21	임	65,714	3,254	10 3,115	전라북도 정읍시 철보면 시산리 330-1	정희준외1인			
81	철보	시산	산80-15		임	47	47			국(건설부)			
82	철보	시산	산92-18		임	1,137	1,137			전라북도			
83	철보	시산	산92-13		임	2,261	2,261			국(건설부)			
84	철보	시산	산92-6		도	401	401			국(건설교통부)			
85	철보	시산	산92-2		도	405	405			전라북도			
86	철보	시산	산92-9		도	244	244			국(건설부)			
87	철보	시산	산92-14		도	457	457			국(건설교통부)			
88	철보	시산	산92-8		도	102	102			국(건설부)			
89	철보	시산	산96-7		도	50	50			국(건설부)			
90	철보	시산	산96-6		도	1,307	1,307			국(건설부)			
91	철보	시산	산96-8		임	1,518	1,518			국(건설부)			
92	철보	시산	산103-9		임	173	173			국(건설부)			
93	철보	시산	산103-5		도	21	21			국(건설부)			
94	철보	시산	산96-5		임	49	49			국(국토교통부)			
95	철보	시산	산101-4		도	418	418			전라북도			
96	철보	시산	산101-3		도	99	99			전라북도			
97	철보	시산	산97-1		도	694	694			국(건설부)			
98	철보	시산	산96-4		도	298	298			전라북도			
99	철보	시산	산103-12		임	74	74			국(건설교통부)			
100	철보	시산	산103-14		도	134	98			전라북도			
101	철보	시산	산103-4		도	741	741			전라북도			
102	철보	시산	산103-11		임	1,033	258			국(건설교통부)			
103	철보	시산	25-2		전	221	139			국(건설교통부)			
104	철보	시산	1227-1		구	157	104			국(농수산부)			
105	철보	시산	산106-3		임	637	480			국(건설교통부)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읍면	동리	지번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분할전	분할후									
106	철보	시산	산110-8		임	76	9			전라북도			
107	철보	시산	산112-7		도	2,721	2,721			국(건설부)			
108	철보	시산	산109-4		도	308	308			전라북도			
109	철보	시산	산106-2		도	3,219	3,219			전라북도			
110	철보	시산	산115-6		도	75	75			전라북도			
111	철보	시산	산115-11		도	60	60			국(건설부)			
112	철보	시산	산115-15		도	2,865	2,865			전라북도			
113	철보	시산	산115-9		도	115	115			국(건설부)			
114	철보	시산	산97-7		임	95	95			국(건설부)			
115	철보	시산	산97-6		도	303	303			국(건설부)			
116	철보	시산	산103-10		도	130	130			전라북도			
117	철보	시산	산97-2		도	94	94			전라북도			
118	철보	시산	산101-2		도	78	78			전라북도			
119	철보	시산	산102-2		도	17	17			한민국			
120	철보	시산	산106-8		도	67	67			전라북도			
121	철보	시산	산106-5		도	189	189			전라북도			
122	철보	시산	산106-6		임	298	298			국(건설부)			
123	철보	시산	산106-4		도	293	293			전라북도			
124	철보	시산	산108-2		임	351	351			국(건설부)			
125	철보	시산	산110-3		임	80	80			국(건설부)			
126	철보	시산	산109-5		임	732	732			국(건설부)			
127	철보	시산	산112-6		임	37	37			국(건설부)			
128	철보	시산	산112-5		임	536	536			국(건설부)			
129	철보	시산	산115-13		임	22	22			국(건설부)			
130	철보	시산	산115-12		임	1,388	1,388			국(건설부)			
131	철보	시산	산115-21		임	2,844	2,844			국(건설교통부)			
132	철보	시산	산62-7		도	230	230			국(건설교통부)			
133	철보	시산	산61-8		도	9	9			국(건설교통부)			
134	철보	시산	산61-2		도	362	362			국(건설교통부)			
135	철보	시산	산61-4		도	92	92			국(건설교통부)			
136	철보	시산	산61-3		임	25,152	903		산내면 능교리 595	주택조			
137	철보	시산	산61-11		임	97	97			국(건설부)			
138	철보	시산	산61-13		도	44	44			국(건설교통부)			
139	철보	시산	산61-14		도	3,927	3,927			국(건설교통부)			
140	철보	시산	산61-15		도	938	938			국(건설교통부)			
141	철보	시산	산61-5		도	863	863			국(건설교통부)			
142	철보	시산	산61-10		도	816	816			국(건설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1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정읍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정읍시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3	정읍시	등계지구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49번지 일원	
		계룡1·2·3지구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92-15번지 일원	
		송산지구	정읍시 송산동 56-3번지 일원	
		시기5·6지구	정읍시 금봉동 86-3번지 일원	

##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정읍시	계	2,912	1,572,477	3,037	1,579,227	125 (4.3%)	6,750 (0.4%)	
	등계지구	174	83,533	174	95,713	-	12,180 (14.6%)	
	계룡1·2·3지구	371	419,427	375	417,375	4 (1.1%)	△2,052 (0.5%)	
	송산지구	1,279	676,149	1,337	659,796	58 (4.5%)	△16,353 (2.4%)	
	시기5·6지구	1,088	393,368	1,151	406,343	68 (6.3%)	12,975 (3.3%)	

⑤ 변경사유 : 지구계 변경 및 지구계 분할로 인한 필지 추가 및 제외

⑥ 지변별조서 : 도보계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정읍시청 황 수 석(063-539-5372)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34호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번호 : 제2012-6450000-008-0059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3.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72-1. 4층
4. 대표자 : 천미혜
5. 주된사업
  - 여성폭력 추방사업 및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 여성차별 근절 제반사업 등
6. 변경사항 : 붙임1
7. 변경일자 : 2024. 2. 14.

## 붙임1

##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정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b>제2조(사무소의 위치)</b>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72-1번지이다</p>	<p><b>제2조(사무소의 위치)</b> 본회의 사무소는 <a href="#">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둔다</a></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조 직</b></p> <p><b>제29조(부설기관)</b> 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성폭력상담소, 숨리골이야기지킴이를 설치한다.</p> <p>②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조 직</b></p> <p><b>제29조(부설기관)</b> 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a href="#">여성폭력피해통합상담소</a>,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a href="#">성폭력상담소</a>, 숨리골이야기지킴이를 설치한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89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 공 고 사 항

- ① 공인 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정비
- ② 공인 등록·폐기일 : 2024년 2월 23일
- ③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공인		
부서명	공인명	인영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고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대응예방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주덕진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대응예방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남원소방서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안소방서	부안소방서 대응예방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김제소방서	김제소방서 대응예방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공인		
부서명	공인명	인영
진안소방서	진안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장수소방서	장수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고창소방서	고창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주덕진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남원소방서	남원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안소방서	부안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김제소방서	김제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 기록관리팀 김예지(280-427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92호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해당 업체에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공시송달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처분업종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주)문화재종합건설 (김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37-9	건축공사업 (14-0677)	영업정지 2개월 (2024.2.19.~ 2024.4.18.)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2024.2.16.
(주)전원건설 (정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8, 1층	토목건축공사업 (14-0227)			
(주)티에이치토건 (박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건원왕궁로 63, 2층	건축공사업 (14-0606)			
(주)신성종합건설 (배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2길 14 (보람빌딩 4층)	건축공사업 (10-0004)			
(주)창주메이크종합건설 (신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안7길 1, 502호	건축공사업 (01-2817)			
(유)한을건설 (권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7, 127	건축공사업 (14-0235)			

2. 공시송달기간 : 2024. 2. 23. ~ 3. 11.(16일간)

3. 공시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5.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른 절차 후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및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주)문화재종합건설 (김행*)	건축공사업 (14-0677)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37-9	○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2024.2.19 ~ 2024.4.18	'24.2.16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증빙자료 보관-처분청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같은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시 건설업 등록말소가 됨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서식1) - 2022.6월 ~ 2023.6월  
- 회사 중도 퇴사자 및 현재 보유 기술자 현황을 월별로 작성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일치 기재
-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서류제출일 기준
- ③ 건설기술자 수첩 사본
- ④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퇴사자 포함) \* 서류제출일 기준
- ⑤ 보유기술인 급여 이체 확인증(최근 2개월) 및 근로계약서 사본
- ⑥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문 의 처

기관명	전북자치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주 소	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	280-3419

##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주)전원건설 (정덕*)	토목건축공사업 (14-022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8, 1층	o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2024.2.19 ~ 2024.4.18	'24.2.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증빙자료 보관-처분청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시 건설업 등록말소가 됨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서식1) - 2022.6월 ~ 2023.6월
  - 회사 중도 퇴사자 및 현재 보유 기술자 현황을 월별로 작성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일치 기재
-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서류제출일 기준
- ③ 건설기술자 수첩 사본
- ④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퇴사자 포함) \* 서류제출일 기준
- ⑤ 보유기술인 급여 이체 확인증(최근 2개월) 및 근로계약서 사본
- ⑥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 □ 문 의 처

기관명	전북자치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	280-3419	

##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주)티에이치토건 (박만*)	건축공사업 (14-06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건원왕궁로 63, 2층	○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2024.2.19 ~ 2024.4.18	'24.2.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증빙자료 보관-처분청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시 건설업 등록말소가 됨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 |  |
|--|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서식1) - 2022.6월 ~ 2023.6월<br>- 회사 중도 퇴사자 및 현재 보유 기술자 현황을 월별로 작성<br>-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일치 기재 |
|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서류제출일 기준   |
| ③ 건설기술자 수첩 사본  |
| ④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퇴사자 포함) * 서류제출일 기준   |
| ⑤ 보유기술인 급여 이체 확인증(최근 2개월) 및 근로계약서 사본   |
| ⑥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

## □ 문 의 처

기관명	전북자치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	280-3419

##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주)신성종합건설 (배근*)	건축공사업 (10-000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2길 14(보람빌딩 4층)	o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2024.2.19 ~ 2024.4.18	'24.2.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증빙자료 보관-처분청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시 건설업 등록말소가 됨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서식1) - 2022.6월 ~ 2023.6월 - 회사 중도 퇴사자 및 현재 보유 기술자 현황을 월별로 작성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일치 기재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서류제출일 기준
③ 건설기술자 수첩 사본
④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퇴사자 포함) * 서류제출일 기준
⑤ 보유기술인 급여 이체 확인증(최근 2개월) 및 근로계약서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 □ 문 의 처

기관명	전북자치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	280-3419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주)창주메이크종합건설 (신성*)	건축공사업 (01-28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안7길 1, 502호	o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2024.2.19 ~ 2024.4.18	'24.2.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증빙자료 보관-처분청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시 건설업 등록말소가 됨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서식1) - 2022.6월 ~ 2023.6월
  - 회사 중도 퇴사자 및 현재 보유 기술자 현황을 월별로 작성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일치 기재
-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서류제출일 기준
- ③ 건설기술자 수첩 사본
- ④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퇴사자 포함) \* 서류제출일 기준
- ⑤ 보유기술인 급여 이체 확인증(최근 2개월) 및 근로계약서 사본
- ⑥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 문 의 처

기관명	전북자치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호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	280-3419

##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유)한을건설 (권영*)	건축공사업 (14-023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7, 127	○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2024.2.19 ~ 2024.4.18	'24.2.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증빙자료 보관-처분청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시 건설업 등록말소가 됨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 |  |
|--|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서식1) - 2022.6월 ~ 2023.6월<br>- 회사 중도 퇴사자 및 현재 보유 기술자 현황을 월별로 작성<br>-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일치 기재 |
|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서류제출일 기준   |
| ③ 건설기술자 수첩 사본  |
| ④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퇴사자 포함) * 서류제출일 기준   |
| ⑤ 보유기술인 급여 이체 확인증(최근 2개월) 및 근로계약서 사본   |
| ⑥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

## □ 문 의 처

기관명	전북자치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	280-3419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94호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의견제출통지)을 영업장 소재지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련 내용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					
2. 당 사 자	상호(업종)	(주)신성종합건설 (대표 : 배근*) / 건축공사업(10-0004), (주)문화재종합건설 (대표 : 김행*) / 건축공사업(10-0004)				
	주 소	(주)신성종합건설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우베기2길 14 (효자동2가, 보람빌딩 4층) (주)문화재종합건설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37-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또는 말소 ('23.06.30, '23.12.31) ※ 국토교통부 공경건설지원팀-140(2024.1.10.) 및 589(2024.2.16.)호 통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중략),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국세청 사업자번호 오류 통보 등에 의해 실제 사실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이 경우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유선 문의 바랍니다.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6. 의 건 제 출	기관명	전북자치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제출처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 번호	280-4455
	전자우편 주소	kimhg119@korea.kr			모사 전송	280-3419
	제출기한	2024년 3월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95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2월 23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43호
- ② 단체명칭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장수군연합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한병목
  - 생년월일 : 1961년 4월 8일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발방골길 72,(생활관1층)
- ⑤ 주된사업 : : 농업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농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농림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 ⑥ 변경내용
  - 대 표 자 : (당초) 류기행 → (변경) 한병목
- ⑦ 허가(변경)일자 : 2024. 2. 19.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280-415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04호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자,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73호
- 2. 단체명칭 : 군산시자율방범연합대
- 3. 대 표 자 : 장 병 훈
- 4.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
- 5. 주된사업
  - 자율방범대 발전을 위한 사업
  - 방법순찰, 예방활동 등

#### 6. 변경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 표 자	백 병 기	장 병 훈	
소 재 지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63-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	

- 7. 최초등록연월일 : 2000. 5. 16.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07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연번	조례안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 강정모(063-280-2187)
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한재희 (063-290-6997)
3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연구과 성경현 (063-290-5434)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감면’과 ‘기회발전 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조례 감면율을 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11조의2)
  - 취득세 50% 추가 감면
- 나.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11조의3)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 취득세 50% 추가 감면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주사무소·공장 이전
    - 취득세 50% 추가 감면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 취득세 25% 추가 감면
- 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1조)
  - 법제처의 조문(조·항·호) 문장작성 원칙에 따라 기존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첨부
- 다. 합 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법무행정과(법제),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 라. 입법예고 : 2024. 1. 26. ~ 2. 15.(20일간)

#### 4.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취득세는”을 “취득세:”로, “전액을 면제한다”를 “전액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득세는”을 “취득세:”로, “전액을 면제한다”를 “전액 면제”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를 “경감율: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감율은 100분의 15로 한다”를 “경감율: 100분의 15”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1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2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 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p> <p>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p> <p>1. ----- ----- 취득세: ----- ----- 전액 면제</p> <p>2. ----- ----- 취득세: ----- ----- 전액 면제</p>
<p>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p> <p>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p> <p>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15 로 한다.</p>	<p>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p> <p>1. ----- 경 감율: 100분의 25</p> <p>2. ----- 경 감율: 100분의 15</p>
<p>&lt;신 설&gt;</p>	<p>제11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11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p> <p>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p> <p>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25</p>

## 참고1

## 관계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

##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12. 27.>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9.]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

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부 칙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3. 작성자

- 세정과 지방세무6급 강정모

##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 1. 제안이유

신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및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물가상승 등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및 감사원 「공립자연휴양림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및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내부 통제 방안 강화하여 휴양림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존 시설 사용료 인상 및 신규 시설 사용료 산정(안 제10조, 별표 1)
- 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장제한 기준 신설(안 제6조)
- 다. 시설물 사용의 예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안 제12조)
- 라. 객실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한 예약제외 시설 운영기준 신설 (안 제13조)
- 마. 예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자 예약 기준 신설(안 제14조)
- 바. 이용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위약금 기준 보완(안 제15조)
- 사. 휴양림 매매·교환 등 금지 규정 신설(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인권담당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12. 29. ~ 2024. 1. 18.(20일간)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4.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입장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도지사가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5.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 6.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의 안전을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휴양림 내 물놀이장은 숙박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12시”를 “11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내야하며”를 “납입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시설물 사용의 예약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예약한 날의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통합예약시스템의 오류로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시설물의 보수 또는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3.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 4.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 2. 관리자 예약 업무 담당자의 지정·해제
-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예약자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예약자는 휴양림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는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휴양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양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예약금의 환불 등)”을 “(예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를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환불”을 “반환”으로 한다.



②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④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시설물에 대한 2024년 5월 1일 이후의 사용을 예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비수기 또는 주중	성수기 또는 주말			
숲속의 집	1동/1일	○ 30.8㎡(4인용)	70,000	100,000	※ 비수기 또는 주중에는 성수기 또는 주말 사용료의 할인율 30% 적용	
		○ 40.4㎡(4인용)	112,000	160,000		
		○ 55.9㎡(8인용)	126,000	180,000		
		○ 62.8㎡(8인용)	161,000	230,000		
		○ 76.5㎡(8인용)	196,000	280,000		
		○ 85.0㎡(15인용)	189,000	270,000		
한옥형 숙박시설	1동/1일	○ 37.08㎡(8인용)	84,000	120,000	※ 비수기 또는 주중에는 성수기 또는 주말 사용료의 할인율 30% 적용	
		○ 75.09㎡(16인용)	168,000	240,000		
산림문화 휴양관	1실/1일	○ 16.0㎡(4인용)	35,000	50,000		※ 비수기 또는 주중에는 성수기 또는 주말 사용료의 할인율 30% 적용
		○ 22.0㎡(4인용)	49,000	70,000		
	○ 105.3㎡(23인용)	238,000	340,000			

1. “성수기”란 매년 7.15~8.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비수기”란 매년 7.15~8.24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3.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별표 2]

##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제15조 관련)

## 1.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구 분	공제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 수 기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2. 전북특별자치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구 분	배상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 수 기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별지 서식]

데미샘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사용대장

			결 재

1. 근무자

직 급	성 명	서 명	직 급	성 명	서 명

2. 예약제외 시설 예약내용

◦ 예약사유 :  
 ◦ 사용자 :  
 ◦ 예약일자 :  
 ◦ 사용일자 :  
 ◦ 사용목적 :

3. 이용인원 및 사용실적

입장자 수	시 설 사 용 실 적			비 고
	주 차 장	숲속의 집	휴양관	
명	대	동	실	

4. 특기사항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6조(입장제한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li> <li>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li> <li>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li> <li>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도지사가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li> <li>5.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li> <li>6.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의 안전을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② 휴양림 내 물놀이장은 숙박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10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u>별표와 같다.</u></p> <p>②·③ (생 략)</p>	<p>제10조(시설사용료) ① ----- -- <u>별표 1과</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② (생 략)</p> <p>③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u>12시까지</u>로 한다.</p> <p>④ (생 략)</p>	<p>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11시</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예약한 날로부터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p> <p>&lt;신 설&gt;</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 기준 7일 전부터는 예약 신청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하며, 예약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당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p> <p>② 시설물 사용의 예약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예약한 날의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p> <p>③ <u>제2항</u>----- ----- - <u>납입하여야 하며</u>----- -----.</p>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사용료를 본인 명의로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제13조(예약금의 환불 등)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④ ----- 제2항 및 제3항-----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예약제의 시설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제의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예약시스템의 오류로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보수 또는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예약제의 시설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예약제의 시설물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예약제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약제의 시설물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업무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예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등) ① -----  
-----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자는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예약금의 환불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 ~ 제20조 (생략)

②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④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 반환-----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예약자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예약자는 휴양림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는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휴양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양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7조 ~ 제23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참고1

관계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금번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은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3. 작성자

-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지방공업서기 한재희

##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상이하여 법률에 따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제한(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인권담당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4. 1. 12. ~ 2024. 2. 1.(20일간)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4.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삭 제</p> <p>2. ~ 4. (생 략)</p> <p>5. <u>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u></p> <p>6. (생 략)</p> <p>② (생 략)</p> <p>③ <u>제1항제5호의 경우 애완동물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처리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7조(행위의 제한) ①</p> <p>-----</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참고1

관계 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 ②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③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금번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3. 작성자

-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연구과 지방녹지연구사 성경현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08호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3회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법인등록취소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발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2. 2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제 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 공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4.
- 공시송달 내역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주소	(주)숲내음(대표 배용기) /전북 정읍시 천변로 340-21 (주)화수분산림(대표 박병록) /전북 정읍시 수성6로 59, 2층 (주)수림(대표 김선호) /전북 정읍시 태평3길 13-16, 2층 (주)대범(대표 최용선) /전북 고창군 흥덕면 용반길 7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회이상 영업정지명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3호 및 제68조제3호				
6. 의 건 제 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청	담당자	산림녹지과 김성지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자로 225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63-280-2681
	전자우편주소	kimsj3782@korea.kr		팩스번호	063-280-3129
	제출기한	2024. 3. 14.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10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23일

구 분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조례안 (3건)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한재희 주무관 290-6997)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연구과 성경현 주무관 290-5434)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국 (세정과 강정모 주무관 280-2319)



전북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2호

### 재산등록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 2월 23일

■ 공 고 사 항

- ① 공개구분 : 퇴직 ('23. 11. 20.)
- ② 소 속 : 남원의료원
- ③ 직 위 : 前)원장
  - 성 명 : 박 주 영
  - 생 년 월 일 : 47. 09. 08

재 산 등 록 사 항 공 개 목 록

소속		전라북도		직위	(전)남원의료원장		성명	박주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계)			385,178	0	16,372	368,806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76번지 605.00㎡	9,136	0	424	8,712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77번지 1,805.00㎡	27,256	0	1,264	25,992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산 90-1번지 2,475.00㎡	5,420	0	346	5,074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78번지 512.00㎡	7,168	0	461	6,707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79번지 945.00㎡	13,230	0	890	12,380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80번지 324.00㎡	4,536	0	292	4,244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35-2번지 437.00㎡	6,511	0	588	5,943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392-7번지 245.00㎡	3,626	0	289	3,357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82번지 972.00㎡	14,677	0	680	13,997	가액변동	
본인	대지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398-2번지 1,420.00㎡	147,588	0	11,218	136,320	가액변동	
배우자	전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성원리 127-3번지 145.00㎡	35,200	0	0	35,200	변동없음	

배우자	담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점원리 152-3번지 418.00㎡	110,880	0	0	0	110,880	변동없음
▶ 건물(소계)			1,123,251	0	165,100	958,151		
본인	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거성고속맨션2차 건물 110.88㎡	91,200	0	7,100	84,1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건물 49.93㎡	391,000	0	79,000	312,000	가액변동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건물 169.80㎡	250,051	0	0	250,051	가액변동	
장녀	아파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건물 49.93㎡	391,000	0	79,000	312,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910	0	4,588	6,322		
장남	자동차	2006년식 sm3 배기량(1,596cc)	1,700	0	991	709	가액변동	
장녀	자동차	2020년식 모닝어반 배기량(998cc)	9,210	0	3,597	5,613	가액변동	
▶ 예금(소계)			618,224	296,893	307,090	608,027		
본인		(주)KEB하나은행 75, AIA생명보험주식회사 827(629 증가), 국민은행 39, 농협은행 26, 산림조합중앙회 296(14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352(12 증가), 씨티은행 208, 현대해상화재보험 3,937(963 증가)	4,142	1,618	0	5,760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4, 교보생명보험 51,116(2,125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061, 새마을금고중앙회 8 5,376(91,344 감소), 전북은행 97,898(96,548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2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7,700	457,825	183,792	176,462	465,155	건물 인테리어 비용 및 생활비 지출	

장남		(주)KB국민은행 10,200(180 증가), 농협은행 12,084(11,286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30,705(50 증가), 중소기업은행 1, 현대해상화재보험 233(233 증가)	41,494	41,729	30,000	53,223	건물 인테리어 비용 및 생활비
장녀		(주)KB국민은행 12,910, 국민은행 29,821(28,885 증가), 농협은행 1, 새마을금고중앙회 4,081(59,830 감소), 신한은행 75(75 증가), 우체국 0(5 감소)	114,753	69,754	100,528	83,889	
▶ 채권(소계)			120,000	0	0	120,000	
본인		사인간채권	120,000	0	0	12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557,741	69,561	3,307	623,995	
본인		사인간채무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139,792(69,561 증가), 전북은행 24,203(3,307 감소)	97,741	69,561	3,307	163,995	건물 인테리어 비용 등 사용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임대보증금	40,000	0	0	40,000	변동없음
장녀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임대보증금	320,000	0	0	320,000	변동없음
총 계			1,699,822	227,332	489,843	1,437,311	증감액: -262,511천원 (기타변동: -186,060천원)

# 도지사 지시사항

◇ 2024. 2. 14.(수) 08:5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4-13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p>○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모금방법이 크게 완화되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애항심을 통해 제정을 확충하고 제도확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 특히,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 분위기 조성(우수공무원 선정 등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lt; 주요 제도개선 사항 &gt;</p> <p>▶ (모금방법 제안 완화) 문자메시지 및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및</p> <p>▶ (연간 상한액 확대)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기존 500만원)</p> <p>▶ (지정기부* 제도 도입)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p> <p>*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 명문화</p> <p>▶ (답례품 구입비용 활용 규정) 일반회계 구입→고향사랑기부금으로도 구입 가능</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자치행정과)</p>
	당면·현안업무	<p>○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력 추진</p> <p>- 새해 새출발, 민생경제 회복 '다함께 민생대책'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도 철저히 챙겨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p>○ 제21대 국회 잔여일정 대응 및 선거법 준수 철저</p> <p>- 총선 이후 21대 5월 국회 임시회가 도정 현안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때 추진할 사안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특히 의원법, 대광법 등 현안법안 등에 대해 의원실과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람</p> <p>- 아울러 다가오는 4.10. 총선에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당면·현안업무	<p>○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노력</p> <p>- 지역 활력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 바람</p> <p>* 간부회의 지시 : '23.11.9. / '24.1.5. / '24.2.1.</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청년정책과)</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전북특별법」 특례별 후속조치 및 신규 특례발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가 도민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그 전에 특례별 실행 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함</li> <li>-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효과성,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꼼꼼하게 챙기고, 추가 특례도 발굴하기 바람</li> <li>-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실국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특례정책과/협조: 전실국)</p> <p>○ 연가 사용 활성화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국장이 솔선수범 해주기 바람. 현재 추진 중인 ‘부서장 없는 날’을 과장급에서 실국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총무과/협조: 전 실국)</p> <p>○ 2023 전북 사회조사 정책제언 도정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삶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li> <li>- 산출된 통계치를 기반으로 실국에서는 소관별 해당하는 지표를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국별 로드맵을 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주기 바람</li> <li>- 또한 지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에 근무중인 빅데이터, 통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p>○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정상 추진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장수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민 의견도 살피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기후환경정책과)</p> <p>○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등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채용, 인증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li> <li>-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운영 재단의 조직·구성 현황 등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동물방역과)</p> <p>○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도 평가체계 이해 증진 교육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우리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광역지자체 중위권 수준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평가체계를 이해하고 평가지표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함</li> <li>- 2.28.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교육에 모든 실국장이 참석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감사위원회/협조: 전 실국)</p>

익산시 고시 제2024 - 32호

## 참다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166번지 일원의 익산 도시관리계획(참다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등의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3일

익 산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 한 내용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함라2	개발 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166번지 일원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88,516	-	88,516	익산시고시 제1997-55호 (1997.09.13.)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함라2	참다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166번지 일원	88,516	-	88,516	익산시고시 제1997-55호 (1997.09.13.)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88,516	-	88,516	100.0	
공 장 용 지	69,918	감)41,102	28,816	32.6	
물 류 시 설 용 지	-	증)41,102	41,102	46.4	
녹 지 용 지	11,454	-	11,454	12.9	
공 공 시 설 용 지	7,144	-	7,144	8.1	도 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 계	기 정	3	632	7,144	2	325	3,455	-	-	-	1	307	3,689
	변 경	-	-	-	-	-	-	-	-	-	-	-	-
	변경후	3	632	7,144	2	325	3,455	-	-	-	1	307	3,689
중 로	기 정	1	307	3,698	-	-	-	-	-	-	1	307	3,689
	변 경	-	-	-	-	-	-	-	-	-	-	-	-
	변경후	1	307	3,698	-	-	-	-	-	-	1	307	3,689
소 로	기 정	2	325	3,455	2	325	3,455	-	-	-	-	-	-
	변 경	-	-	-	-	-	-	-	-	-	-	-	-
	변경후	2	325	3,455	2	325	3,455	-	-	-	-	-	-

2)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 정	중 로	3	1	12	국 지 도 로	307	신대리 166장	신대리 166장	일 반 도 로	단지내 도 로	익산시고시 제2009-81호 (2009.08.14.)	
기 정	소 로	1	1	10	국 지 도 로	89	신대리 166장	신대리 166장	일 반 도 로	단지내 도 로	익산시고시 제2015-104호 (2015.09.18.)	
기 정	소 로	1	2	10	국 지 도 로	236	신대리 166장	신대리 158장	일 반 도 로	단지내 도 로	익산시고시 제2015-104호 (2015.09.18.)	

##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획 지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소 계			88,516	-	88,516	-	-
	A-1	A	1	88,516	함라면 신대리 166	41,102	공장용지	물류시설용지
	A-2		2		함라면 신대리 166-72 일원	16,765	공장용지	공장용지
	A-3		3		함라면 신대리 166-69	12,051		
	A-4		4		함라면 신대리 166-70 일원	7,144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A-5		5		함라면 신대리 166	4,624	녹지용지	녹지용지
	A-6		6		함라면 신대리 166-71 일원	2,596		
	A-7		7		함라면 신대리 166-72 일원	2,916		
	A-8		8		함라면 신대리 166-69	1,31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A-1 A-2 A-3	A-1 A-2 A-3	용도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장(음식료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불허	· 지정 외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A-5 A-6 A-7 A-8	A-5 A-6 A-7 A-8	용도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불허	· 지정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변경	A-1	A-1	용도	지정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 중 가목 및 나목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나·라목 ·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불허	· 허용 외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A-2 A-3	A-2 A-3	용도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장(음식료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불허	· 지정 외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A-5 A-6 A-7 A-8	A-5 A-6 A-7 A-8	용도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불허	· 지정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실음 생략”

김제시 고시 제2024-30호

## 김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인가 받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2월 2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위 치 : 김제시 하동 35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나. 명 칭 : 김제 스위트포레 노인복지임대주택건설사업
3. 사업의 규모  
가. 면 적 : 13,732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유)마하주택개발 대표이사 김 병 태  
나.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덕용1길 50, A동 301호(동산동, 대승아파트상가)
5. 사업기간 : 2017. 7. 21. ~ 2022. 6. 30.
6. 취소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3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상실 및 사업기간 도과에 따른 인가 실효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완주군 고시 제2024-22호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농업기술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2월 2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945-7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농업기술센터)사업

나. 명 칭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면적 : 11,089㎡(건축물 증축 및 태양광 설비설치 363kw)

구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농업기술센터	2,932.99	52.57	2,985.56	5,007.98	122.92	5,130.90	본관동 증축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완주군수(건축허가과장)

나. 주 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건축허가일 ~ 2025.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읍면	리	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12,322	11,089						
1	고산	삼기	945-61	대	2,816	2,735	완주군					
2	고산	삼기	945-70	대	6,695	6,609	완주군					
3	고산	삼기	946-3	대	1,611	1,611	완주군					
4	고산	삼기	946-5	대	1,200	134	완주군					

임실군 고시 제2024-20호

### 임실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임실군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임실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문화시설)사업을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임 실 군 수  
2024년 02월 23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위 치	사 업 규 모					비 고	
		구 분	결정면적	1단계	2단계	3단계		
문화시설 (전수회관)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1번지 일원 (풍물민속 마을)	부지 면적	계	94,255㎡	51,175㎡	16,081㎡	37,216㎡	
			당초 문화시설	51,175㎡	51,175㎡	10,217㎡	-	금회 사업면적은 한옥체험관 건설을 위해 1단계 완료구역 내 10,217㎡를 포함한 사항임
			추가 문화시설	43,080㎡	-	5,864㎡	37,216㎡	
		건축 연면적	구 분	총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계	4,293.28㎡	3,810.90㎡	482.38㎡	-	9동
			당초 문화시설	4,105.85㎡	3,810.90㎡	294.95㎡	-	기 문화시설 내 6동, 294.95㎡
			추가 문화시설	187.43㎡	-	187.43㎡	-	추가 문화시설 내 3동, 187.43㎡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임실군수

나.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7. 기타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건설과(☎063-640-23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붙임]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재지 :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 고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37-1	대	13,649	6,322	임실군	-	-	-	-	
2	37-2	대	1,480	654	임실군	-	-	-	-	
3	37-3	대	6,241	3,153	임실군	-	-	-	-	
4	37-4	도	763	269	임실군	-	-	-	-	
5	37-5	대	23,324	2,836	임실군	-	-	-	-	
6	37-6	대	1,748	759	임실군	-	-	-	-	
7	37-7	대	9,376	2,088	임실군	-	-	-	-	
합 계			94,542	16,081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31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인의 등록

가. 공인 등록사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으로 공인 제작 후 등록

나. 최초 사용년월일: 2024. 2. 26.

다. 공인 등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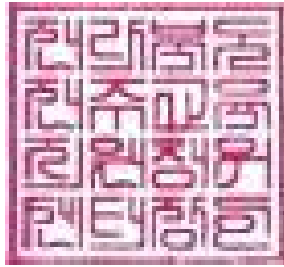
공 인	명(규격)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2cm*2cm)	공인 인영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위센터 장인 (3.6cm*3.6cm)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위센터 장인 (3.6cm*3.6cm)	

2. 공인의 폐기

가. 공인 폐기사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으로 공인 제작 후 기존 공인 폐기

나. 폐기일: 2024. 2. 26.

다. 공인 폐기내용

공 인 명(규격)	
	공인 인영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2cm*2cm)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위센터장인 (3.6cm*3.6cm)	
전라북도도전주교육지원청위센터장인 (3.6cm*3.6cm)	

금남초등학교 공고 제2024-02호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공인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금남초등학교장

- 1. 폐기 연월일: 2024년 02월 29일
- 2. 폐기 내역

폐 기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금남초등학교장인<폐교>		

폐 기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금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폐교>		

폐 기 공 인		
금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폐교>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금남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폐교>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금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폐교>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안초등학교장





2024년 2월 23일

#### 1. 공인의 등록(재등록)

가. 공인 등록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제5439호), 명칭 변경

나.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다. 공인 등록내용(9개)

신 규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고창부안초등학교장인 <명칭변경>		
고창부안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명칭변경>	공인 인영	
		
고창부안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명칭변경>	공인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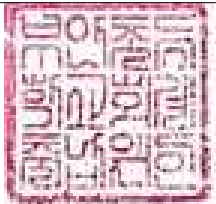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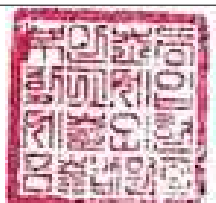

<p>고창부안초등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lt;명칭변경&gt;</p>	<p>공인 인영</p> 
<p>고창부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lt;명칭변경&gt;</p>	<p>공인 인영</p> 
<p>고창부안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lt;명칭변경&gt;</p>	<p>공인 인영</p> 
<p>고창부안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lt;명칭변경&gt;</p>	<p>공인 인영</p> 
<p>고창부안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lt;명칭변경&gt;</p>	<p>공인 인영</p> 
<p>고창부안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lt;명칭변경&gt;</p>	<p>공인 인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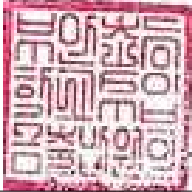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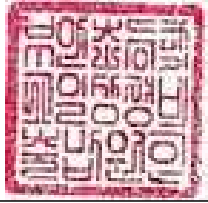
2. 공인의 폐기

가. 공인 폐기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제5439호), 명칭변경

나. 폐기일: 2024년 3월 1일

다. 공인 폐기내용

폐 기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장인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병설유치원 폐원>	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분임정수관인	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공인 인영
	
부안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 인영
	

※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초등학교 행정실 공인담당자(564-603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초등학교 공고 제2024-3호

### 공인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오천초등학교장

2024년 2월 23일

#### 1. 공인의 폐기

- 가. 공인 폐기사유: 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 나. 폐기일: 2024년 2월 29일
- 다. 공인 폐기내용

공 인 명	
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4cm×2.4cm)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전주문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 - 4 호

### 공인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주문정초등학교장  
2024년 2월 23일

- 1. 공인 폐기일: 2024년 2월 29일
- 2. 폐기 내역

폐 기 공 인	
전주문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인 <병설유치원 폐지>	공인 인영
	

전주팔복초등학교 공고 제2024-004호

### 전주팔복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보 게재 의뢰합니다..

김명숙  
2024년 02월 23일

■ 공 고 사 항

- ① 명칭 : 전주팔복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② 학교장 :
  - 성 명 : 김명숙
  - 생 년 월 일 : 650213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비고
전주팔복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김명숙	전주팔복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	전주팔복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팔복초등학교 행정실(063-211-449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산중학교 공고 제2024-01호

### 공인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산중학교장  
2024년 2월 23일

- 1. 사용폐기일: 2024년 2월 29일
- 2. 등록 및 폐기 내역

폐 기 공 인		
주산중학교장인<학교 통합(폐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주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학교 통합(폐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주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인 <학교 통합(폐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화율초등학교 공고 제2024-01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율초등학교장

2024년 2월 23일

- 1. 폐기 연월일: 2024년 02월 29일
- 2. 폐기 내역

폐 기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화율초등학교장인<폐교>		

폐 기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폐교>		

폐 기 공 인		
화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폐교>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화율초등학교세입세출외회계출 납원인<폐교>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화율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폐교>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화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폐교>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